

# 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—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2월 7일

나. 제안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2월 9일

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윤영섭

나. 제안이유

- 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진흥을 지원할 재단법인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운용할 재산(기 지정기탁)을 양여코자함.

다. 주요내용

| 처분재산 | 수 량                  | 면적(㎡)     | 추정가격(千원)  | 소유자 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|
| 계    | 주식:5,861주<br>토지: 36필 | 토지:33,014 | 2,114,748 | 구미시장 |    |
| 주식   | 5,861주               |           | 32,555    | “    |    |
| 토지   | 구미시:15필              | 10,564    | 1,728,818 | “    |    |
|      | 칠곡군:21필              | 22,450    | 385,930   | “    |    |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제78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, 제10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은 지난 제54회 임시회(9.29)시 상정  
심의한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에 의거 2001년도 재단 설립을  
위한 재산 처분(양여) 계획으로서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02조6항에  
의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을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